

보건환경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

제정일: 2002.03.01.

개정일: 2019.02.20.

담당부서: 보건환경대학원 행정팀(033-760-2366)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위원회) ① 장학위원회는 원장, 부원장,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,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.

②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, 장학금의 종류, 지급대상, 지급기준액을 심의 결정한다.

제3조(재원)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학교 장학금
- ② 기타

제4조(기타운용 및 관리) 본 대학원 장학기금의 운용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며, 원주총무처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급대상) 다음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일반장학금은 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.
- ② 군장학금은 군위탁생에게 지급한다.
- ③ 공무원장학금은 관학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.
- ④ 산학협약장학금은 산학협력기관의 재직 직원에게 지급한다.
- ⑤ 원우회장학금은 해당학기의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며, 수혜 인원은 대학원에서 정한다.
- ⑥ 교직원장학금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재단 산하의 교직원에게 지급한다.
- ⑦ 특별장학금은 본 대학원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지급 한다
- ⑧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노동조합직원에게 지급한다.
- ⑨ 경찰장학금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.
- ⑩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은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,
- ⑪ 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은 원주산학협력단 사무국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
- ⑫ 원주산학협력단단기직원장학금은 과제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원주산학협력단 과제협약단기직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한다.

제6조(지급 기준액)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

장학금명	장학금액	비 고
일반장학금	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	1,500,000원(2018학년도 기준)
군장학금	등록금의 50%	
원우회장학금	등록금의 50%	
교직원장학금(매지)	입학금, 등록금의 70%	
교직원장학금(매지 제외)	등록금의 60%	
공무원장학금	등록금의 60% 이내	협약 등에 의해 차등하여 지급가능
산학협약장학금	등록금의 30%	
특별장학금	대학원장이 자율로 정함	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
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	등록금의 35% 이내	
경찰장학금	등록금의 50% 이내	
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	등록금의 35% 이내	
원주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	등록금의 70% 이내	
원주산학협력단단기직원장학금	등록금의 50% 이내	직전학기 성적 4.0 이상에만 지급

제7조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.

제8조(지급금지)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.

②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추천 및 승인) ① 원우회장은 매 학기 원우회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고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.

② 본 대학원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장학생으로 추천하고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.

제10조(지급방법)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고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등록하도록 한다.

제11조(기타사항)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(장학금 지급 규정)에 따른다.

부칙

(1)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이 개정 내규(제6조, 제8조)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3)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(4)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(제5조, 제6조)는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5) (경과조치) 이 내규(제5조, 제6조)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